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산동면 읍승격 및 비산동·공단1동 행정동 통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

2. 주요내용

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
- 일반직 계 : 1,755명(변동없음)
 - 5급 : 91명 → 90명(△1명)
 - 6급 이하 : 1,645명 → 1,646명(+1명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출장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795	1,795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755	1,755					
3급	1	1					
4급	11	6	1	1	1	2	
5급	90	39	3	5	4	13	26
6급이하 소계	1,646	1,646	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7					
별정직 계	1	1					
5급 상당			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1					
연구직 계	5	5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5	5					
지도직 계	33	33					
지도관	3				3		
지도사	30	30					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⑤ 생략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 삭제
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

③ ~ ⑤ 생략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주 영
	담 당	강 유 현
	담 당 자	양 상 병 (480-6773)